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6월 18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 개정이유

종로구 세입징수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운용상 문제점의 개선·보완을 위해 행정자치부 표준안 및 서울시 조례 개정내용을 참고하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II. 주요내용

- 가. 일상적인 징수업무 수행에 따른 체납액 징수 경우 등이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의 범위를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함 (안 제2조)
- 나.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기준이 1년차 체납과 2년차 이상 체납과의 격차가 커서 2년차 이상 체납의 경우를 차등화 하여 2년차의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하고, 3년차 이상의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100분의 5로 함 (안 제3조)
- 다. 부칙에서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기준 개정내용에 관해서는 소급적용을 두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단서규정을 둠 (부칙 제1항).

III. 검토의견

1. 조례 정비 배경

○ 1995년 8월 1일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하여 체납세 등 지방세입 징수에 이바지한 관련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구 세입증대 및 세정발전을 도모해 오고 있으나, 징수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2005년도 감사원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자치부(2006. 3. 28 지방세정팀-1263)와 서울특별시(2006. 10. 10 세무과-27507)로부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관련 개선방안이 통보되어 그 간의 운용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데 그 배경이 있다 하겠습니다.

2.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그 징수액의 100분의1 내지 100분의5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고만 포상금지급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체납세 징수 노력과 관계 없이 과년도 체납액(미수액) 전체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하여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

2)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특별공적”의 범위를 체납처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에 징수한 미수액 등으로 규정하여 단순 체납처분업무, 일상적인 독촉장 발부, 자동차압류 업무는 물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의 자발적 납부까지도 특별공적에 포함하여 세입포상금을 지급한 사례

3. 개선내용

1) 현행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분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100분의1, 2년차 이상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로 지급기준을 정한 것을 앞으로는 2년차의 체납을 징수한 경우는 그 징수액의 100분

의3으로 하고, 3년차 이상의 체납을 징수한 경우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로 연도별 차등화 하여 지급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예산절감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일상적인 징수업무 수행에 따른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의 범위를 각 국별로 설치 · 운영하는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게 됨에 따라 공적심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포상금 제도 도입의 취지에도 맞게 운영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4. 소급적용 사항의 타당성 · 적합성 여부

○ 부칙 제1항 시행일과 관련하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기준 개정내용과 관련해서 소급적용을 두고 있는 바,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 소급적용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이익을 주거나 법 적용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하겠으나, 소급입법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의 요청에 어긋나므로 가급적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과 같이 공포 시행일전에 체납액 징수 포상금을 해당 직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에 따라 정산하여 환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직원에게는 불이익을 주게 되고, 또한 부칙 제2항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과도 상충되므로 소급적용 규정을 두는 것은 적합하지 아니하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007년도에 포상금지급조례를 개정한 중랑구(2007. 2. 22)와 관악구(2007. 2. 20)의 조례를 보면, 소급적용을 하지 아니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개정되었습니다.

IV. 참고자료

-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관련 개선방안 통보 (행정자치부 지방세정 팀
-1263. 2006. 3. 28)
- 시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 통보 (서울특별시 세무과-27507.
2006. 10. 10)